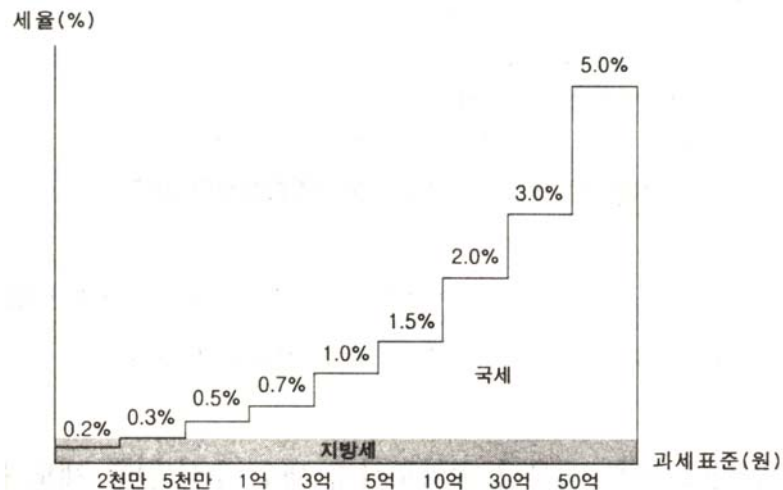


두 번째 방안은 토지세는 단순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전국합산 누진과세분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이양한다는 안이다. 즉 토지세는 토지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합산과세분은 초과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여 모두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되 시·군·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를 공제해준다는 안이다. 이 경우에는 비례세율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.



[그림 2] 제2안의 과세 방법 (종합합산의 경우)⁴⁾

세 번째 방안은 토지소유자가 주거지 관할구역 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이다.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토지세는 각 시·군·구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,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,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되 토지세 과세분은 공제하는 방안이다.

3) [그림 1]은 과표 3억원 초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(국세)를 징수하는 경우를 나타냄.

4) [그림 2]는 지방세의 비례세율을 0.3%로 적용한 경우를 나타냄.